

체납 상수도 계정 추심 정책 MARINA COAST 상수도 지구

1.0. 일반 사항

체납 계정에 대한 추심 실시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60370조 내지 제60375.5조가 카운티 상수도 지구법에 따라 특별 지구로 설립된 주의 한 기관인 Marina Coast 상수도 지구(이하 "MCWD" 또는 "지구")에 적용된다. 또한, 200개 이상의 상수도 연결 파이프에 물을 공급하는 도시 또는 지역사회의 상수도 시스템으로서 지구는 2020년 2월 1일부터 법으로 시행되는 상원 의안 번호 제998호의 적용을 받는다.

적용

본 추심 정책은 지구의 상수도 및 재활용수 계정에 대한 모든 추심 행위에 적용된다.

2.0. 법령의 변경

해당 법률 또는 규정이 수정 또는 삭제되거나, 새로운 법률 또는 규정이 채택되는 경우, 개정된 법률 또는 규정은 본 방침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본 방침을 대체한다.

3.0. 정의

"대체 (분할 상환) 납부 약정"이란 정상적인 납부 기간 내에 상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없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체결되고 지구가 보증하기로 결정한 약정을 의미한다.

"체납 계정"이란 상수도 요금 고지서 발행 후 30일째 되는 날의 업무 마감 시간까지 미납 상태로 남아 있는 (그리고 납부 약정이 체결되지 않거나 대체 납부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계정을 의미한다.

"체납(연체)료"란 고지서 납부 기한 경과 후 30일째 되는 날에 미납 잔액에 대해 고객에 부과되는 요금을 의미한다.

"기한 경과 통지"란 기한 경과 후 30일째 되는 날의 미납 잔액에 대해 지구가 고객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서면 통지를 의미한다.

"체납료 면제"란 정상 참작 사유가 있고 고객이 직전 6개월 동안 납부 지연으로 체납료를 부과받은 적이 없는 경우 고객의 요청으로 지구가 체납료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수 통지서"란 60일 이상 체납된 계정에 대해 지구가 상수도 요금 미납을 이유로 고객에게 우송한 상수도 공급 차단(단수) 통지서를 의미한다.

"48시간 전 통지"란 상수도 요금 미납을 이유로 고객에게 48시간 전에 미리 단수를 통지하는, 문에 붙이는 형태의 통지서를 의미한다.

"부도 수표 처분 통지"란 부도 수표로 인해 고객에게 48시간 내로 상수도 공급을 종료하겠다고 통지하는, 문에 붙이는 형태의 통지서를 의미한다.

4.0. 절차

체납 계정 추심에는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4.1 체납료

고지서 납부 기한 경과 후 30일째 되는 날의 업무 마감 시간까지 고지서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 경과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체납료가 부과된다. 납부 기한과 체납료는 고지서에 두드러지게 표시되어야 한다.

4.2 체납료 면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구는 정상 참작 사유가 있고 고객이 직전 6개월 동안 납부 지연으로 체납료를 부과받은 적이 없을 경우 체납료를 면제한다.

4.3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체납료 면제

캘리포니아주는 건전한 재무 기반 및 예산 승인과 보증 납부 절차의 변경을 이유로 체납 통지를 받지 않으며 또한 계정 지연 납부 체납료도 부과받지 아니한다.

4.4 대체 (분할 상환) 납부 약정

정상적인 납부 기간 내에 상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없는 고객은 체납료 또는 상수도 공급 중단(단수)을 피하기 위해 대체 납부 약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구는 요청을 둘러싼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납부 약정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4.4 a. 주치의의 증명서

단수하게 되면 상수도가 제공되는 지역의 거주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주치의(일반의, 산부인과 의사, 소아과 의사, 가정의, 1차 진료 의원, 병원, 또는 외래환자 의원) 증명서가 있으면 지구는 분할 상황 납부 계획에 서명해야 한다.

다음 고지서 청구 기간까지 계속되는 납부 약정은 분할 상환 계획으로 본다. 동 계획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고객이 서명해야 한다. 분할 상환 계획에 따라 미납 잔액은 고객이 규정한 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되, 고지서의 최초 날짜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분할 상환된 납부금은 고객의 정규 고지서 금액과 합산되며, 이에 대해 정규 고지서의 기한이 적용된다. 고객은 분할 상환 계획의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후의 각 고지서 청구 기간에 요금이 발생할 때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고객은, 분할 상환 계획에 따라 체납료를 납부할 동안, 후속 미납 요금에 대해 추가적인 분할 상환을 요청할 수 없다. 분할 상환 계획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수 통지서가 발행된다. 단수 통지는 적어도 단수하기 5 영업일 전까지 해당 지역으로 도어 행거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4.5 단수 통지서

지구는 고객 납부가 60일 이상 체납될 때까지 미납을 이유로 상수도 공급을 중단해서는 아니된다. 지구는 미납을 이유로 상수도 공급을 중단하기 7 영업일 전까지 서면으로 고객에게 연락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수 통지서는 계정에서 지정된 우편 주소로 우송해야 한다. 우편 주소와 상수도가 제공되는 재산의 주소가 다른 경우, 두 번째 통지를 상수도 제공 주소로 "점유자" 앞으로 우송해야 한다. 단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고객의 이름과 주소
- 기한이 지난 금액
- 단수를 피하기 위해 납부 또는 납부 약정이 필요한 기한
- 분할 상환 계획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
- 고지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삼기 위한 절차에 대한 설명
- 지구 전화 번호 및 지구의 서면 추심 정책에 대한 웹 링크

4.5 a. 개별적으로 계량기가 설치된 거주지의 거주 세입자/ 점유자에 대한 통지

지구는 상수도 계정이 연체되고 단수 대상이 된 경우 상수도 공급을 차단하기 10일 전까지 점유자에게 서면 통지로 알리기 위해 합리적이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입자/점유자가 해당 주소의 후속 상수도 요금에 대해 금전적으로 책임질 의향이 있는 한, 이들은 납부 기한이 된 체납 계정 금액을 납부할 필요 없이 지구의 고객이 될 권리가 있음을 서면 통지를 통해 고지 받아야 한다. 납부 기한이 된 체납 계정 금액을 면제받으려면, 세입자/점유자는 임차계약서 형태의 임차 증명서 또는 차임 납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4.5 b. 기본 계량기를 통해 상수도가 공급되는 다세대 단지의 세입자/점유자에 대한 통지

지구는 상수도 계정이 연체되고 단수 대상이 된 경우 상수도 공급을 차단하기 10일 전까지 점유자에게 각 거주지의 문에 매단 서면 통지 방식으로 알리기 위해 합리적이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입자/점유자가 기본 계량기로 측정되는 상수도가 공급되는 해당 주소의 후속 상수도 요금에 대해 금전적으로 책임질 의향이 있는 한, 이들은 납부 기한이 된 체납 계정 금액을 납부할 필요 없이 지구의 고객이 될 권리가 있음을 서면 통지를 통해 고지 받아야 한다. 한 명 이상의 점유자가 지구가 만족하도록 후속 상수도 요금에 대해 책임을 질 의향과 능력이 있거나, 상수도 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유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단수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물리적 수단이 지구에게 있는 경우, 지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점유자에게 상수도를 공급한다.

단수 통지서가 송달 불능으로 우편을 통해 반송된 경우, 지구는 거주지를 방문하여 미납으로 인한 단수 통지를 남기기 위해 합리적이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6 48시간 전 단수 통지

지구는 미납으로 인한 상수도 공급 차단(단수)을 48시간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수 통지는 해당 지역으로 도어 행거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4.7 단수 기한

고객은 단수 통지서에 명시된 날의 오후 5시 00분까지 모든 체납 상수도 요금 및 관련 수수료를 지구에 납부해야 한다.

4.8 미납으로 인한 상수도 단수

지구는 계량기를 잠가 상수도 공급을 차단한다. 단수 전에, 고객은 상수도 공급 종료(단수) 7 영업일 전까지 단수 통지서로 그리고 단수 48시간 전까지 두 번째 통지서로 단수를 통지받아야 한다. 지구는 또한 단수 24시간 전까지 고객에게 전화한다. 지구는 고객이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전화 정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상수도 공급을 다시 받으려면 고객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최초 단수 후 7일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량기는 끄기 위치에서 잠겨진다.

4.9 상수도 재공급

상수도 공급을 다시 받거나 미납을 이유로 단수된 상수도 공급을 계속 받으려면, 고객은 체납 잔액과 관련 수수료, \$20.00의 재 연결 수수료를 납부하고, \$ 40.00의 추가 예치금(현금 또는 예치에 국한된 용도의 수표)을 제공해야 한다. 지구는 가능한 한 빨리

상수도를 재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되, 최소한 체납금 및 단수로 인한 체납 수수료에 대해 납부가 이루어진 날이 끝나기 전에 상수도를 복원한다. 지구의 직원이 아닌 사람에 의하거나 지구의 승인 없이 공급이 이루어진 상수도에 대해서는 벌금 또는 추가 요금이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상수도의 무단 복원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고객이 부담한다.

4.10 부도 수표의 처분 통지

상수도 대금 또는 기타 요금으로 받은 수표가 예금 부족으로 반송된 경우, 지구는 해당 계정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지구는 부도 수표를 고객에게 전화로 통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도 수표로 인해 48시간 전 단수 통지가 또한 이루어진다. 통지는 전화로 해야 한다. 지구가 전화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를 방문하여 단수 통지를 남기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부도 수표 금액과 부도 수표 요금을 단수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 또는 그 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상수도는 차단된다. 부도 수표를 보상하고 부도 수표 요금을 납부하기 위한 금액은 현금, 신용 카드 또는 인증된 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4.11 이전에 단수된 상수도 대금으로 제공한 부도 수표

고객이 이전에 미납을 이유로 단수된 상수도를 복원하기 위한 대금으로 비유통(양도불능) 수표를 제공하고 지구가 상수도를 복원하는 경우, 지구는 추가 통지 없이 즉시 단수할 수 있다. 중단 대상이었던 상수도 요금의 대가로 납부한 비유통 수표의 경우, 48시간 전 단수 통지가 제공되지 아니한다.

4.12 고지서에 대한 분쟁

고객이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사회에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구는 이의제기가 진행 중일 동안 미납을 이유로 단수하지 아니한다.

4.13 정보 제공

지구는 SB 998에 따라 본 정보를 지구 고객에게 제공한다. 여기에는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필요한 언어로 본 정책상 요구되는 통지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